글 | 신 동 원 대리 기술개발부 02-3433-7718 | E-mail : tunny21@ssyenc.com

2004년 소방법규 주요개정내용

소방방재청은 50여년전에 제정된 현 소방법을 소방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4개의 법률로 분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안하는 것

1. 소방법 개정취지

소방방재청은 50여년전에 제정된 현 소방법을 소방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4개의 법률로 분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

1-2 . 기본방향

①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경계,소방현장활동,화재조사,구조,구급업무,의용소방대와 소방관련기관,단체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정

③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소방시설공사,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소방법규 주요 개정내용

2-1. 소방기본법/령/규칙

가.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재난, 재해 그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나. **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

1-1. 소방법규 신 · 구체계도

기본법 체계	개정법 체계			
소 방 법	소방기본법 (03.5.29) 법률 제689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03.5.29) 법률 제6894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03.5.29) 법률 제689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03.5.29) 법률 제6896호
시 행 령	시행령(04.4.24) 대통령령 제18374호	시행령(04.5.29) 대통령령 제18405호	시행령(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	시행령(04.5.29) 대통령령 제18406호
시행규칙	시행규칙(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시행규칙(04.7.7) 행정자치부령 제241호	시행규칙(04.7.7)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시행규칙(04.7.7) 행정자치부령 제242호
시설기준규칙	화재안전기준(NFSC CODE)			

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 · 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5조)

다. **소화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 시 ·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다만,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라. **화재의 예방조치등**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법 제12조)

①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5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보일러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지켜야 할 사항. (별표1)

①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한다.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등 으로부터 0.5M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천장사이의 거리는 0.6M이상 되도록 한다.

④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법 제34조)

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규칙

가. **소방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소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법 제4조/령 제7,8,9조)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8조/령 제13,14조/규칙 제5조)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령 제15조,별표4)

■ 별표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구 분	시행령 제20조
소화기구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3)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2005년1월1일부터 시행
옥내소화전	변경사항 없음
스프링쿨러	1.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제외)은 다음 각목의 1과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스프링쿨러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것. 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아파트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 아.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제외)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간 이 스프링쿨러	1.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 연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1.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경보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연면적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바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경보설비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닥 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용수설비	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제외)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인 층

라.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 제11조/령 제17, 18조)

①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②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간이스프링쿨러,비상경보,비상방송등의 소화시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위험물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마. 소방대상물의 방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방염대상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스프링쿨러 또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이 제1항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서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2조/ 령 제19조, 20조)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구 분	시행령 제19조
적용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헬스클럽,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숙박시설,종합병원,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4.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 방염대상물과 방염성능기준

구 분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브라인드를 포함한다) ② 카펫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방염 성능 기준	2.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③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④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 밀도는 400이하

바. 소방대상물의 방염 : 1)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9조/령제36조)

■ 별표8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인력기준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인정자격 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 비고 ※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고,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령/규칙

가. **착공신고** : 1) 공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령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쿨러설비,간이스프

링쿨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경우를 제외한다),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② 스프링쿨러설비,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제연설비의 제연구역,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①수신반 ②소화펌프 ③동력(감시)제어반

나. **완공검사** :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완공검사를 갈음하되,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 제14조/령 제5조)

다. **공사의 하자보수보증등**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법 제15조/령 제6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1)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쿨러설비,간이스프링쿨러설비,물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라. **공사감리자의 지정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있다. (법 제17조/령 제1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①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②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③ 단독경보형감지기 ④비상방송설비 ⑤누전경보기 ⑥자동화재속보설비 ⑦가스누설경보기 ⑧피난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쿨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감리** : 제4조제1항(소방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소방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소방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령 제9조)

① 소방시설등 설계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⑤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⑦피난,방화시설의 적합성 검토

⑧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⑨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 별표3

구 분	대 상	방 법
상주 공사 감리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한다.다만,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 공사 감리	가.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법 제16조제 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3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 별표4

(1)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3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2(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감리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특급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2(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감리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고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2(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감리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1제3호 부표2(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감리원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초급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 동일인이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 설계업자,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및 감리를 함께할 수 없다. (법 제24조)

2-4 위험물안전관리법/령/규칙

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제한** :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5조)

①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등**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 위 소방법규 주요개정 내용은 2004년10월28일 기준임.

참고문헌

http://www.gwanbo.korea.go.kr(관보사이트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소방방재청 홈페이지)